

의정부역 다채로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청약안내문

1.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94-8번지
규모	아파트(1개동, 지하4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시설 포함)
세대수 / 주차대수	총92세대 / 계획114대(세대당1.23대)
주택형	84A, 84B

2. 분양문의

구분	내용
분양홍보관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94-8번지
홈페이지 주소	https://uijeongbu-dachaeroum.co.kr
연락처	1533-9848

3. 위치도



4. 분양 일정(예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청약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계약일
2024.12.13.	2024.12.23.	2024.12.24.	2024.12.26.	2025.01.02.	2025.01.13.~15.

5.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84A	84B	계
국가유공자	1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중소기업 근로자	-	1	1
장애인	-	1	1
합계			5

6. 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자격	<p>·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당,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p> <p>※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p> <p>※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p>※ 추천기관</p> <p>[참고]신청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방부 국군복지단</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중소 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 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 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